

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1. 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- 가. 제안이유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자원재활용기본
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의
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· 시행의 근거규정을 “법 제7조제
2항”에서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 변경 (안 제3조제1항)
 -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원 재활용실행계획의 근거규정을 “시 조례
제3조”에서 “법 제7조제4항” 변경 (안 제3조제2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--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락)
- 5. 討 論 要 旨 (없 음)
- 6. 修 正 案 的 要 旨 (없 음)
- 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